

목련장학 안내

1. 신청 대상 : 2020학년도 2학기 본 대학원 신입생/재학생으로서 다음 1)~4)에 해당하는 자

- 1)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
- 2) 차상위계층의 학생
- 3) 장애 1-3 등급인 학생(본인만 해당)
- 4) 기타 가계곤란자 중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한 학생(가족합산)
 - ①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액(평균납입액) 120,000원 이하이며,
-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+ 장기요양보험료(합산 총액)
 - ② 2019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80,000원 이하이며,
 - ③ 2019년 연소득액이 45,000,000원 이하인 자(가족 합산)
 - 미혼인 경우 : 부, 모, 본인의 연소득 합계
 - 기혼인 경우 : 배우자, 본인, 자녀(미성년자 제외)의 연소득 합계

※ 위의 기준이 중복 해당될 경우 장학금액이 가장 높은 한 기준만 적용됨

2. 신청자격

- 1) 2020학년도 1학기 본교 대학원 신입생/재학생(수료생 제외)
- 2) 직전학기 성적B학점(80점) 이상(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)

3. 제출서류 :

- 1) 장학금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
- 2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3) 해당 관련 증명서

구분	대상	제출서류	발급처
필수 서류	부모와 동일세대 구성	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	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- 온라인 minwon.go.kr
	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(사별 포함)	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	
	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	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	
	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/ 배우자 사망	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	
	배우자와 이혼	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	
선택 서류	기초생활수급권자	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본인 명의로 발급)	- 주민자치센터 - 온라인 minwon.go.kr
	장애 1-3 등급인 학생	장애인 증명서(본인 명의로 발급)	- 온라인 minwon.go.kr
	차상위계층 대상자	차상위계층 증빙서류(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 명의로 발급) 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자활근로확인서 -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-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	- 주민자치센터 - 국민건강보험공단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지대상자급여(변경)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 통보서 발급자 	
	가계곤란 대상자	<p>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-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<p>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2019년도 발행분), 건강보험증 사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시,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(부, 모 각각) -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,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,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(건강보험료면제자)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부, 의료급여증 사본 1부 - 부모가 학생의 형제(자매)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,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, 건강보험증 사본 1부 <p>2019년도(부, 모, 본인 각각)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가 없는 경우도 증빙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홈페이지 (http://nhic.or.kr) - 주민자치센터 - 민원24 (http://www.minwon.go.kr)

※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

4. 장학금 지급기준(안)

구분	지급기준(수업료 기준)	비고
기초생활수급자	100%	
장애학생	1급	100%
	2급	80%
	3급	50%
차상위계층	80%	
가계곤란 소득분위 1분위	50%	
가계곤란 소득분위 2~3분위	30%	
가계곤란 소득분위 4~5분위	20%	

※ 모든 장학은 입학금 제외

※ 위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 장학사정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음

5. 기타 사항

- 1)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·외장학금 이중수혜 가능(단,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)
- 2)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시 학자금대출 반환 처리함
- 3) 목련장학을 받는 학생이 연구조교를 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목련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장학 수혜 가능함